

대구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가단46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이성민, 이시중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윤창민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796,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 C와 함께 플라스틱포장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 2.경 피고의 소개로 (주)E 등에 마스크 등 포장지 제품을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처를 소개해준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를 원고가 거절하자 피고는 돈을 주지 않으면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협박으로 원고는 2020. 6. 5.부터 2021. 8.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50,796,57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796,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처를 소개한 대가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거나 영업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20. 7. 22.부터 2020. 12.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및 선정자 C이 2021. 5. 7.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21. 4.경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6,360,000원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2021. 7.경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거래처를 소개해준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

선정자명단

1. A
2. C. 끝.

